

목 차

제 1 장 총칙

1. 목적
2. 관련근거
3. 적용범위
4. 용어의 정의
5. 대표이사 및 임직원의 의무 (산안법 제 5 조~제 6 조)
6.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계획 (산안법 제 14 조)
7. 도급 시 안전보건조치 (산안법 제 63 조~제 64 조)

제 2 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8. 안전보건관리 조직 (산안법 제 15 조~제 18 조, 제 62 조)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안법 제 24 조)

제 3 장 안전보건교육

10.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산안법 제 29 조)
11. 교육실행 점검

제 4 장 작업장 안전관리

12. 안전조치 (산안법 제 38 조)
13.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검사 (산안법 제 83 조~제 95 조)
14. 표준작업안전수칙
15.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제한
16. 작업중지 (산안법 제 51 조~52 조)
17. 비상조치계획 및 비상대응훈련
18. 안전보건표지 (산업법 제 37 조)

제 5 장 작업장 보건관리

19. 보건조치 (산안법 제 39 조)
20. 작업환경측정 (산안법 제 125 조)

21. 건강진단 (산안법 제 129 조~제 133 조)
2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비치 (산안법 제 114 조~제 115 조)
23. 보호구
24.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산안법 제 138 조)
25. 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취업제한 (산안법 제 140 조)
26.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27. 고액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산안법 제 41 조)

제 6 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28.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산안법 제 57 조 등)
29.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30. 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제 7 장 위험성평가

31. 위험성평가 (산안법 제 36 조)
32.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및 교육실시
33.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34. 위험성평가 시기

제 8 장 보칙

35. 포상 및 징계
36. 문서보존연한
37. 개정절차
38. 별첨

제 1 장 총칙

1 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LF(이하 '회사'라 한다) 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 및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하여 회사 내 임직원 등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에 목적이 있다.

2 관련근거

- 2.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제 25 조~제 27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5 조
- 2.2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안법 및 관계법령,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한다.

3 적용범위

- 3.1 본 규정은 회사 내 전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 3.2 도급시 안전보건조치 등 일부 내용은 회사를 출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 등에게 적용될 수 있다.

4 용어의 정의

- 4.1 "법령"이란 산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총칭하여 말한다.
- 4.2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4.3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재해를 말한다.
 - 4.3.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4.3.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4.3.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4.4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1항 제 1호)
- 4.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4.6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 4.7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 4.8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 4.9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 4.10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 4.11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4.12 "안전검사"란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의 안전성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서 현장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4.13 "건강진단"이란 임직원의 건강을 보호 및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기관 등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4.14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임직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회사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4.15 "위험성평가"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및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5 대표이사 및 임직원의 의무 (산안법 제 5 조~제 6 조)
- 5.1 대표이사는 아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임직원의 안전보건 및 건강을 유지·증진하여야 한다.
 - 5.1.1 관계법령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 5.1.2 임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 5.1.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임직원에게 제공
 - 5.1.4 기계 및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 또는 제조, 수입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 5.1.5 원재료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 5.1.6 건설물을 발주 또는 설계, 건설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 5.2 임직원은 산안법 등 관계법령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사내기준 등을 준수하고 회사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따라야 한다.
 - 5.3 안전보건BSU장은 제 5.1 항 및 제 5.2 항을 이행하기 위한 사내 가이드를 마련하고, 그룹웨어 게시 등 임직원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6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계획 (산안법 제 14 조)
 - 6.1 대표이사는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적인 경영철학 등을 담은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 6.2 안전보건 BSU 장은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경영방침과 안전보건목표를 포함한 당해연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6.2.1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유해위험요인, 규모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내용일 것
 - 6.2.2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할 것
 - 6.2.3 종사자 등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을 것
 - 6.3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목표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계획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 6.4 안전보건BSU장은 모든 구성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목표를 회사의 그룹웨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 7 도급 시 안전보건조치 (산안법 제 63 조~제 64 조)
 - 7.1 대표이사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회사 내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임직원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7.2 도급사업 주관 부서장은 안전보건BSU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와 도급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작업장 순회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도출된 유해위험 요인 등에 대하여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7.3 안전보건BSU장은 안전협의체 구성 및 순회점검, 합동점검의 주기, 점검내용 등에 구체적 사항을 정한 사내 가이드를 제정 및 배포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제 2 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 8 안전보건관리 조직 (산안법 제 15 조~제 18 조, 제 62 조)
 - 8.1 대표이사는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직책을 수행하는 자에게 이 규정과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시설 및 장비,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8.2 안전보건 BSU 장은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직무별 업무내용, 선임방법 및 직무교육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한 사내 가이드를 제정 및 배포하여야 한다.

8.3 안전보건 BSU 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기 1 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안법 제 24 조)

9.1 대표이사는 회사 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9.2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에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9.3 해당 부서장은 안전보건BSU장과 협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되거나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9.4 안전보건 BSU 장은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9.3 항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는지 반기 1 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5 안전보건 BSU 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위원회 개최주기, 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한 사내 가이드를 제정 및 배포하여야 한다.

제 3 장 안전보건교육

10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산안법 제 29 조)

10.1 안전보건 BSU 장은 차기 연도에 실시할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교육계획을 매년 12 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하고, 그룹웨어 게시 등 임직원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2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및 대상, 주기는 아래와 같다.

10.2.1 채용교육: 신규입사자가 최초 1 회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의미한다.

10.2.2 정기교육: 전 임직원이 매분기 6 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의미한다.

10.2.3 특별교육: 유해화학물질 또는 위험기계 취급업무 등을 수행하는 임직원이 최초 1 회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의미한다

10.2.4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법령이 정한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문기관 등을 통하여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의미한다.

11 교육실행 점검

- 11.1 안전보건 BSU 장은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반기 1 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단, 전문기관 등을 통하여 점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받아야 한다.
- 11.2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교육 미실시 또는 부적정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행지시 및 예산확보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4 장 작업장 안전관리

12 안전조치 (산안법 제 38 조)

- 12.1 대표이사는 아래 위험으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2.1.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12.1.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12.1.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12.1.4 하역,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또는 그 밖의 작업
- 12.2 대표이사는 아래 장소에서 작업 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2.2.1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12.2.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 12.2.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12.2.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 12.3 해당 부서장은 안전보건 BSU 장과 협의하여 상기 위험작업 및 위험장소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12.4 안전보건 BSU 장은 위험작업 등에 대한 안전보건점검, 예방조치 및 이행여부를 반기 1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3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검사 (산안법 제 83 조~제 95 조)

- 13.1 대표이사는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이하 "유해·위험기계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사용 또는 수입하는 경우, 법정 안전기준에 따른 적격품의 사용 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안법 제 87 조)
- 13.2 해당 부서장은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화학물질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사전에 안전보건 BSU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BSU 장은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대상여부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부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13.3 해당 부서장은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의 법정주기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미실시하거나 불합격한 기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산안법 제 95 조)

14 표준작업안전수칙

- 14.1 안전보건 BSU 장은 연 1 회 이상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유해위험요소를 파악하여야 한다.
- 14.2 해당 부서장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안전보건 BSU 장과 협의하여 해당 공정 및 작업 등의 특성이 고려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정하여야 한다.
 - 14.2.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하는 경우
 - 14.2.2 기계 및 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되는 경우
 - 14.2.3 화학물질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 14.2.4 작업방법이나 작업절차가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되는 경우
 - 14.2.5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14.2.6 그 밖에 안전보건 BSU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14.3 해당 부서는 표준작업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5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제한

- 15.1 안전보건 BSU 장은 회사 내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을 파악하여야 한다.
- 15.2 해당 부서장은 안전보건 BSU 장과 협의하여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5.3 안전보건 BSU 장은 해당 위험물질에 대한 MSDS 등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 15.4 해당 부서장은 위험물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 15.5 해당 부서장은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금지, 해당 물질의 위험성 등을 포함한 안내표지를 부착하여 해당 장소를 출입하는 임직원 등에게 위험장소 주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 15.6 필요시, 해당 부서장은 1 명 이상의 위험물 취급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15.6.1 위험물 취급관리자가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6 작업중지 (산안법 제 51 조~52 조)

- 16.1 대표이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 등을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6.2 대표이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임직원 등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6.3 임직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한 자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자는 즉시 안전보건 BSU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7 비상조치계획 및 비상대응훈련
- 17.1 대표이사는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7.2 안전보건 BSU 장은 아래 사항을 포함한 비상대응규정(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 17.2.1 작업 중지, 임직원 등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17.2.2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17.2.3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17.3 안전보건 BSU 장은 해당 규정(매뉴얼)에 따른 훈련실시 등을 반기 1 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17.4 중대재해 등 비상사태 대응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내기준인 "비상사태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18 안전보건표지 (산업법 제 37 조)
- 18.1 해당 부서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및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등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 BSU 장과 협의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18.2 안전보건 BSU 장은 안전보건표지 종류와 형태, 설치·부착 장소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정한 사내 가이드를 제정 및 배포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제 5 장 작업장 보건관리

- 19 보건조치 (산안법 제 39 조)
- 19.1 대표이사는 아래 건강장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9.1.1 원재료 또는 가스, 증기, 분진, 흙, 미스트, 산소결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19.1.2 방사선 또는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19.1.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또는 액체,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19.1.4 계측감시 또는 컴퓨터 단말기 조직,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19.1.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19.1.6 환기 또는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19.2 해당 부서장은 안전보건 BSU 장과 협의하여 상기 유해요인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건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19.3 안전보건 BSU 장은 상기 유해요인에 안전보건점검, 예방조치 및 이행여부를 반기 1 회 이상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20 작업환경측정 (산안법 제 125 조)
- 20.1 대표이사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임직원이 근무하는 작업장에 대해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2 안전보건 BSU 장은 작업환경측정 유해요인의 종류, 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사내 가이드를 제정 및 배포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 20.3 해당 부서장은 사내 가이드 및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21 건강진단 (산안법 제 129 조~제 133 조)
- 21.1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의 요구 시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임회시켜야 한다.
 - 21.2 해당 부서장은 건강진단 결과, 임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측정 실시 또는 시설/설비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1.3 안전보건 BSU 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경우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본인의 동의없이 개별 임직원의 건강진단결과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 21.4 안전보건 BSU 장은 건강진단의 대상,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건강진단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룹웨어 게시 등 임직원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1.5 임직원은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 등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 미실시 시, 관계기관에 의한 과태료 부과 또는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21.6 건강진단의 종류 및 대상은 아래와 같다.
 - 21.6.1 일반건강진단: 모든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

- 21.6.2 특수건강진단: 직업병 발생원인이 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
- 21.6.3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 예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
- 21.6.4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및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해당 임직원의 신속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 21.6.5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에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 감염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의 경우에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2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비치 (산안법 제 114 조~제 115 조)

- 22.1 해당 부서장은 MSDS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및 작업공정별로 이를 취급하는 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아래의 장소에 MSDS 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 22.1.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 22.1.2 작업장 내 임직원이 가장 보기 쉬운 장소
 - 22.1.3 임직원이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 22.2 해당 부서장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MSDS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2.3 해당 부서장은 MSDS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아래의 시기에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2.3.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직원을 배치하게 된 경우
 - 22.3.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 22.3.3 유해성, 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23 보호구

- 23.1 임직원은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회사로부터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23.2 해당 부서장은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직접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3.3 해당 부서장은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직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3.4 해당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보호구 등의 점검과 그 착용 및 사용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23.5 안전보건 BSU 장은 연 1 회 이상 법정 안전기준에 따른 적격품의 사용 등이 될 수 있도록 확인 하여야 한다.
- 24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산안법 제 138 조)
- 24.1 해당 부서장은 안전보건 BSU 장과 협의하여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조현병 및 마비성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린 자,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로 인하여 병세 악화가 우려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24.2 해당 부서장은 안전보건 BSU 장과 협의하여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임직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지체없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25 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취업제한 (산안법 제 140 조)
- 25.1 해당 부서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5.2 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 26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 26.1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폐기물 관리 등 적정수준을 유지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6.2 해당 부서장은 직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6.2.1 작업대의 높이 또는 작업 반경
 - 26.2.2 동선이 고려되는 업무
 - 26.2.3 컨베이어벨트 등 순환작업의 속도
 - 26.2.4 기타 임직원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작업
 - 26.3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27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산안법 제 41 조)
 - 27.1 대표이사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 임직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7.2 대표이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 3 자의 폭언 등으로 임직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7.3 안전보건 BSU 장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7.3.1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 27.3.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 27.3.3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 27.3.4 그 밖에 고객응대 임직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27.4 임직원은 제 27.2 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고,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6 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 28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산안법 제 57 조 등)
 - 28.1 대표이사는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8.2 사고 최초 목격자 또는 발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한 자에게 신속히 재해발생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28.2.1 중대재해: 지체없이 안전보건 BSU 통보
 - 28.2.2 중대재해 외: 24 시간 이내 안전보건 BSU 통보
 - 28.3 해당 부서장은 사고발생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을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8.4 해당 부서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28.5 안전보건 BSU 장은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28.6 노무담당 및 홍보담당 부서장은 유족대응 등 노무관련 이슈 및 언론이슈에 대하여 각각 대응하여야 한다.
 - 28.7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29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29.1 대표이사는 사고발생 원인조사 시 신속하고 독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9.2 해당 부서장은 안전보건 BSU 장 및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사고발생원인, 재발방지대책 및 개선조치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 29.2.1 필요 시 유관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요청하여야 한다.
 - 29.2.2 개선요구서를 받은 유관부서장 등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9.3 안전보건 BSU 장은 계획된 개선일정에 따라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필요 시 보완사항을 요청한다.
 - 29.4 안전보건 BSU 장은 사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 30 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 30.1 안전보건 BSU 장은 정기적으로 재해발생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30.2 안전보건 BSU 장은 회사의 연간 재해율 감소를 위하여 필요 시 재해율 감소대책을 수립·추진한다.

제 7 장 위험성평가

- 31 위험성평가 (산안법 제 36 조)
- 31.1 대표이사는 사업장 내 모든 유해 및 위험요인(이하 "유해위험요인"이라 한다)을 파악하여 위험성을 추정 및 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1.2 해당 부서장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단계에서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을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안전보건 BUS 장과 협의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31.2.1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 31.2.2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 31.2.3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 31.3 해당 부서장은 사업장 내 모든 유해 및 위험요인(이하 "유해위험요인"이라 한다)을 파악하여 위험성을 추정 및 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31.3.1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하여야 한다.
- 32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및 교육실시
 - 32.1 안전보건 BSU 장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32.2 안전보건 BSU 장은 위험성평가 담당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회사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33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 33.1 안전보건 BSU 장은 회사 내 위험성평가 실시대상 사업부서 또는 사업장을 매년 선정하고, 해당 공정과 작업내용을 고려하여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 33.2 위험성평가 실시대상 부서장은 아래의 방법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 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33.2.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 33.2.2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 33.2.3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 33.2.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 33.2.5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 33.3 해당 부서장은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및 주지 등의 방법으로 임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 34 위험성평가 시기
 - 34.1 최초평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 34.2 정기평가: 최초 평가 후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34.2.1 기계 및 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34.2.2 직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34.2.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34.2.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34.3 수시평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고, 계획의 실행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34.3.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및 이전, 변경 또는 해체
 - 34.3.2 기계 및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34.3.3 건설물 및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34.3.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34.3.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 34.3.6 그 밖에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 8 장 보칙

- 35 포상 및 징계
 - 35.1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회사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기준 및 절차 등은 회사의 관계 규정에 의한다.
 - 35.2 임직원이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근무태만 등으로 아래와 같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회사의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할 수 있다
 - 35.2.1 산업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내용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35.2.2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 35.2.3 각종 사고 및 재해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 35.2.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 35.3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회사의 관계 규정에 의한다.
- 36 문서보존연한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의 보존기한은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5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7 개정절차

37.1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개정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37.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회사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임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38 별첨

38.1 별첨 1 제/개정 이력

